

## ●환경부공고 제2024-518호

「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8월 13일

환경부장관

### 「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사업장일반폐기물 수출입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('24.10.1)에 대비하여 건의사항과 그 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현장정보 전송 제외대상 확대

- 1) 화폐 등 보안제품 폐기물, 철도차량·선박·컨베이어 등으로 수집·운반하거나 폐기물 적재차량을 선박에 선적하여 이동하는 경우 위치정보 전송 제외
- 2) 철도차량·선박·컨베이어 등으로 수집·운반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 다층형 집합건축물에 소재하여 차량 출입구가 없는 경우 진입로 영상정보 전송 제외
- 3) 폐기물 보관상태 촬영이 곤란한 저장시설만 보유한 경우 또는 보관시설 미설치로 허가받은 경우 보관장소 영상정보 전송 제외

##### 나. 계량값 측정 및 전송방법 완화

- 1) 동일부지에서 인계·인수하는 폐기물 중 대량 배출되거나 특수차량 또는 운송장치로 운반하는 경우 계량값을 일일총량으로 산정
- 2) 폐기물 적재상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동일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배출자 계량시설 측정 허용
- 3) 계량전표 발급 기능이 없는 계량기 사용업체는 용기중량과 총중량의 측정값 표출화면을 사진으로 대체전송 허용

##### 다. 영상정보 촬영 및 전송방법 합리화

- 1) 인터넷 미보급지역의 경우 자동전송단말기(PC)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1개월 이내 현장정보관리 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대체전송 허용
- 2) 진입로 및 계량시설 영상정보를 1대의 CCTV로 진입로 및 계량시설 영상정보가 촬영 가능한 경우 통합하여 1대만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

##### 라. 수출입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규정 신설

- 1) 계량값의 경우 계량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수출입자만 전송의무 부여
- 2) 컨테이너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위치정보는 사업장과 수출입항 출도착시 컨테이너 봉인장치 및 주변사진을 2일 이내에 전송하고, 트레일러로 운반 시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전송 예외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)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필요사항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(일반우편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,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
(전자우편) [namkung6@korea.kr](mailto:namkung6@korea.kr) (팩스) 044-201-7376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(044-201-736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